

# 예비전력 정책서

(2026년 ~ 2040년)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주의 · 공지사항

1. 본 정책서는 군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정책서의 내용에 관하여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 900-5211)로 제안한다.

# 발 간 사



오늘날 예비전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장에서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예비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병력자원의 감소와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안보환경 속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예비전력정책서』는 이러한 노력을 집대성한 성과이자, 앞으로 예비전력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입니다.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의 혁신적인 과제를 조직구조·인력·훈련·무기체계·제도개선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서는 각 군과 유관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예비전력 발전 문서의 기준이자 체계적인 발전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예비전력의 실질적 강화와 정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다면, 어떠한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에 버금가는 '튼튼한 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급 부대와 기관에서도 본 정책서의 취지를 깊이 새기고,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곧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소중한 과업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안 규 백

“공 란”

# 목 차

## 제 1 장

### 총 론

제 1 절 개 요 .....	1
제 2 절 안보정세와 예비전력환경 평가 .....	2
제 3 절 주요국의 예비군 제도 .....	5
제 4 절 세부과업 및 추진전략 .....	9

## 제 2 장

### 과제별 세부계획

제 1 절 부대유형별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방안 마련 .....	11
제 2 절 지역예비군조직 효율화 .....	15
제 3 절 상비예비군 발전 .....	17
제 4 절 예비역 간부 확보 .....	20
제 5 절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	23
제 6 절 동원훈련장 과학화 및 통합저장시설 구축..	27
제 7 절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 무기체계·물자보강	30
제 8 절 병력동원부대 지정 시스템 개선 .....	33
제 9 절 병력동원 소요 최적화 및 전시 인력운용 개선	35
제 10 절 ‘軍-병무청’간 예비전력 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 .....	39

“공 란”

# 제 1 장 총 론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안보정세와 예비전력환경 평가

제 3 절 주요국의 예비군 제도

제 4 절 세부과제 및 추진전략

“공 란”

## 제 1 절 개 요

### 1. 작성 목적

가. 「예비전력정책서」는 「국방전략서」, 국정과제, 국방개혁 과제 등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예비전력 발전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나. 본 문서의 작성목적은 우리군의 예비전력 분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 군 기본정책서에 중·장기 예비전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하는데 있다.

### 2. 문서의 성격 및 대상 기간

가. 「예비전력정책서」는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전략서」, 국방개혁 과제와 연계하여 작성된 예비전력 정책의 최상위 기획문서이다.

나. 문서의 대상 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이다.

### 3. 문서의 적용

가. 「예비전력정책서」는 각 군 기본정책서 예비전력분야 작성의 기준이 되며, 예비전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준을 제공한다.

나. 「예비전력정책서」는 5년마다 작성(대상기간 F+1 ~ F+15년)하며, 작성하지 않는 연도는 필요 시 수정 및 보완한다.

### 4. 주무부서

가. 본 정책서에 대한 주무부서는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이다.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 발전시킬 사항은 주무부서로 제기한다.

\*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 : 900 - 5211(02-748-5211)

## 제 2 절 안보정세와 예비전력환경 평가

### 1. 안보정세

가. (국제 안보환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중동 지역의 불안정, 테러·사이버 위협 확산 등으로 인해 전통적·비전통적 위협이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 1)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전략경쟁 속에서 국제 질서는 다극화 양상을 띠며, 협력보다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 2) 무인기, 전자기 공격, 인공지능 기반 지휘체계 등 새로운 전력 수단이 전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 3) 테러, 사이버 공격, 공급망 교란, 기후 변화와 같은 비군사적 요인이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요 인프라 보호와 사이버 방호는 국가 차원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안보 불안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전쟁 시 국가 생존은 전쟁초기 대규모 동원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5) 최근 전쟁에서 예비전력 활용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고 압도적인 우세 달성이 가능해지면서 軍의 확장과 전쟁지속력 보장을 위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나. (국내 환경) 주변 강대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 북한 군사능력 등을 고려 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 필요하나, 인구감소로 인해 상비군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1)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술핵 운용과 고체연료 ICBM 시험 등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 2) 미·중 전략경쟁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인구감소와 병역자원의 축소는 전력 유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예비전력환경 평가

가. (조직·구조) 상비사단의 경우 평시 편성률이 100%가 아닌 불완전한 구조이며, 동원병력이 지정된 일자에 부대로 이동 시 교통혼잡 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 1) 적의 기습도발 등 전시 초기에 전투임무뿐만 아니라, 동원령 선포 후 긴급단계까지 대규모의 부대 증·창설을 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 2) 동원병력이 지정된 일자에 소집부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동원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 (예비군)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의 감소로 전시 동원병력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되고 있으나, 상비병력 감소의 연쇄적 효과로 예비군 자원도 감소하고 있다.

- 1) 간부 부족으로 특정 계급의 경우 하위계급을 상위계급 직위로 상향지정 하더라도 동원지정률은 70% 미만, 적소지정률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 2) 현재의 <sup>가칭</sup>상비예비군(현재 법 개정 진행 중으로 이하 상비예비군으로 명기) 제도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간부 부족), 낮은 훈련참가비 및 참가율 등은 상비예비군의 효과적 운용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예비군자원 전망(‘25년 KIDA, 상비예비군 신분 및 역할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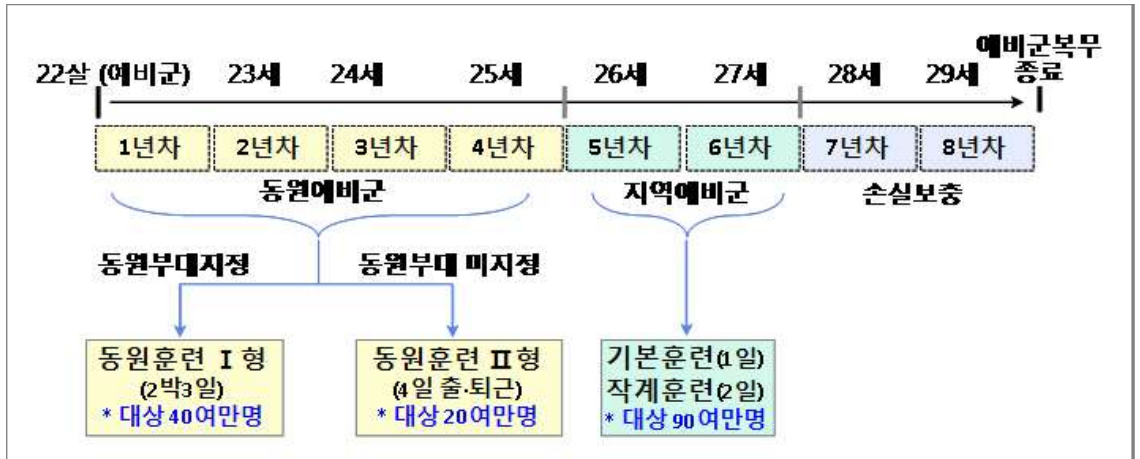
구 분	2025	2034	2036	2038	2040	2042	2044	2046
예비군(1~8년차) 단위 : 만명	256	150.7	150.4	146.0	136.6	121.0	106.0	89.9

다. (예비군훈련) 현역복무 경험을 통해 개인 전투역량이 우수한 대규모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훈련기간은 年 3~4일에 불과하여 훈련일수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 1) 동원예비군은 예비군 1~4년차로써 부대로 동원되며, 동원훈련 I형(숙영) 또는 동원훈련 II형(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하지만, 동원부대 미지정자는 전시에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으나, 그에 부합한 훈련을 제한적으로만 실시하고 있다.

- 2) 지역예비군은 예비군 5~6년차로써 지역예비군조직(읍·면·동)에 편성되며, 작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이 형식적이고 훈련여건도 열악하다.

※ 예비군편성 및 훈련체계(예비군 260여만명 中 1~6년차까지 훈련)



라. (예비군 장비·물자) 동원사단의 장비·물자 보강은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후 정상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신규 무기체계를 보강하여 상비사단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 전시에 예비군들은 노후화된 장비·물자로 대응이 불가피하여 동원예비군들의 전투력과 동원응소 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2) 동원보충대대는 그간 장비·물자 보강 계획도 없어 동원보충대대의 소요를 재판단 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3) 특히, 전시 초기에 동원전개 되어야 하는 부대를 중심으로 임무에 맞게 장비·물자를 우선 보강할 필요가 있다.

마. (제도 및 업무수행체계) 현재의 병력동원계획은 소요제기, 동원지정, 훈련계획수립 등에 있어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전쟁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제한된다.

또한, 예비군 자원관리 등 행정처리 업무가 병무청 - 군부대 - 지역예비군조직으로 분산되어 있어 협조 소요가 많고,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수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제 3 절 주요국의 예비군제도

### 1. 미 국 (모병제)

가. (예비전력 운용) 베트남전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함에 따른 상비 정규군의 감축과 국방비 삭감으로 인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상비 정규군과 예비군(주방위군+연방방위군)으로 구성된 총체전력 개념을 도입하였다.

- 1) 현역부대는 100% 현역(상비 정규군)으로 편성, 다양한 전투 수행이 가능하도록 여단단위로 모듈화부대를 구성하여 단독 임무수행이 가능한 신속대응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2) 연방예비군은 100% 예비군으로 편성, 전·평시에 현역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작전지속지원 부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 3) 주방위군은 100% 예비군으로 편성, 평시에 주방위(테러 등) 및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현역(상비 정규군) 부대를 증원 및 교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방위군의 경우 그 지역의 인구와 전략자산에 따라 '대대~사단급'까지 유연하게 편성되어 있다.

#### ※ 미국의 총체전력(Total Force) 정책



나. (예비군 복무형태) 미국의 예비군은 계약에 따라 다양한 복무 형태를 가지고 있다.

1) 동원부대 지정 및 훈련가능 유무에 따라 상비예비군, 보류예비군, 퇴역예비군으로 구분한다.

- 상비 예비군 (Ready Reserve) : 동원지정 및 훈련이 가능한 예비군
- 보류예비군 (Stand-by Reserve) : 개인 또는 공적인 사유로 예비군 복무(훈련)를 보류 중인 예비군
- 퇴역예비군(Retired Reserve) :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한 예비군

2) 상비예비군은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선발하여 운용하는 선발예비군(Selected Reserve)과 현재는 동원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복무기간이 남아 유사시 동원지정이 가능한 대기 연방예비군(Individual Ready Reserve), 대기 주방위군(Inactive National Guard)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상비예비군 중 선발예비군은 예비군복무 지원자 중 선발하여 운용 및 훈련하는 예비군으로 총체전력상의 예비군 병력에 반영되는 인원이다.

※ 선발예비군(76.4만명) 복무구조(‘24년말 기준)

구분	인원	내용
부대편성 예비군 (TPU) Troop Program Unit	54.2만 (70.9%)	美 예비군의 주력으로서 예비군부대에 부대단위로 편성된 비상근(Part-Time) 훈련자고 선발예비군의 70~80% 규모 * 年 38일 훈련 = 월 1회 주말훈련(1박 2일, 年 12회) + 年 14일 동원훈련
상근예비군 (AGR) Active Guard Reserve	9만 (11.8%)	예비군부대에 상근(Full-Time) 복무하는 요원으로, 예비군훈련, 관리, 운용, 계획 등 수행, 선발예비군의 6~10% 규모 * AGR은 진급, 급여, 복지, 복무기간(계급정년) 등 현역과 동일
개인보충동원 예비군(IMA) Individual Mobilization Augmentees	1.5만 (2.0%)	현역부대의 신속한 전시확장을 위해 개인별로 충원되는 예비군으로 선발예비군의 1~2% 규모 * 연간 14일(동원훈련)만 실시
ADOS, MT	11.7만 (15.3%)	◦ ADOS(Active Duty Operation Support)는 임시 계약으로 TPU, AGR, IMA 직위에 복무 ◦ MT(Military Technicians)는 민간인으로 현역·예비군부대에 계약 복무, 유사시 예비군 전환

다. (예비군 복무기간) 미군의 의무 복무기간은 8년이며, 최초 지원 시부터 현역 또는 예비군(연방예비군, 주방위군)을 선택할 수 있고, 지원한 軍과 현역 복무연수에 따라 예비군 복무기간은 다르게 편성된다.

- 1) 계약에 의해 다양한 조합의 복무 선택이 가능하다.
- 2) 예비군부터 복무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복무 선택의 폭이 넓고, 주특기·자격증 등과 계약 조건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 3) 현역과 예비군간 상호 신분전환이 가능하다.

※ 예비군 복무기간

범례 : 선발 예비군 선발예비군 또는 개인준비예비군

기초 군사	군 별		현역				예비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4년	장교	현역	4년				+ 2년		+ 2년					
		예비군					6년		+ 2년					
6 개 월	현역 (병)	육군	2년						+ 6년					
			3년						+ 5년					
			4년						+ 4년					
			5년						+ 3년					
		해군	2년		+ 2년						+ 4년			
			2년						+ 4년		+ 2년			
		공군/ 해병대	4년						+ 4년					
			4년						+ 4년					
예비군(병) (각군 동일)						6년		+ 2년						

라. (예비군 훈련) 훈련은 개인훈련과 부대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대부분 부대편성예비군(TPU)으로 年 38일간 훈련한다.

1) 개인훈련은 소속부대에서 실시

- 월 1회 (1박 2일) 주말 소집훈련 : 개인 전투기술 및 주특기 훈련
- 종합훈련(동원훈련) 시 개인훈련 수준 평가(훈련센터)

2) 부대훈련은 지정된 동원훈련장에서 실시

- 부대별 지정장소에서 훈련 실시(年 14일)
- 종합훈련 기간에는 전투력 창출계획(SRM)에 주안을 두고 실시
  - \* 연차별 중점훈련 : 1년차(개인), 2년차(개인+병과), 3년차(부대단위훈련), 4년차(해외파병 전개준비) 등 4년 주기로 집중 훈련

## 2. 독일 (모병제)

가. (예비전력 운용) 2011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부족한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전시에 동원되는 일반예비군과 모병 개념의 부대편성예비군 및 개인보충예비군이 있다.

1) 부대편성예비군(Reinforcement reserve)은 약 8천명 수준으로 부대의 전투태세유지와 전시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해 상비군과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원보충대대 및 지역별 동원사령부, 지역방위부대에서 평시 계약형태로 복무한다.

\* 우리의 단기 상비예비군과 유사한 역할 수행

2) 개인보충예비군(Personal reserve)은 약 8천명 수준으로 현역에 대한 보충과 현역이 위탁교육·해외파병·장기 휴가 등으로 장기간 부재 시 이를 대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 일반예비군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18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 중 예비역 또는 미필자로 편성한다.

나. (예비군 복무형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별(1~3주) 복무한다.

다. (예비군 훈련) 훈련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훈련을 할 경우 통상 年 1~3주 정도 소집하여 단기훈련 형태로 실시한다.

## 3. 이스라엘 (징병제)

가. (예비전력 운용) 평상시 상비군은 억제·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시에 동원·소집된 예비군부대가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나. (예비군 복무형태) 현역복무(남성 32개월, 여성 24개월) 후 예비군부대로 편입하며, 사단 내에 현역과 예비군으로만 각각 편성된 여단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예비군 훈련) 3년 동안 계급별로 매년 25일~84일까지 소집하여 훈련한다.

\* 전투병 25일, 전투지원병 54일, 부사관 70일, 장교 84일

## 제 4 절 세부과업 및 추진전략

### 1. 세부과업

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분 야	세 부 과 제
미래 군 구조 설계	① 부대유형별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방안 마련
	② 지역예비군조직 효율화
예비군 정예화	③ 상비예비군 발전
	④ 예비역 간부 확보
훈련장비 과학화	⑤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⑥ 동원훈련장 과학화 및 통합저장시설 구축
	⑦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 무기체계·물자 보장
동원체계 개선	⑧ 병력동원부대지정 시스템 개선
	⑨ 병력동원 소요 최적화 및 전시 인력운용 개선
행정체계 개선	⑩ '軍-병무청'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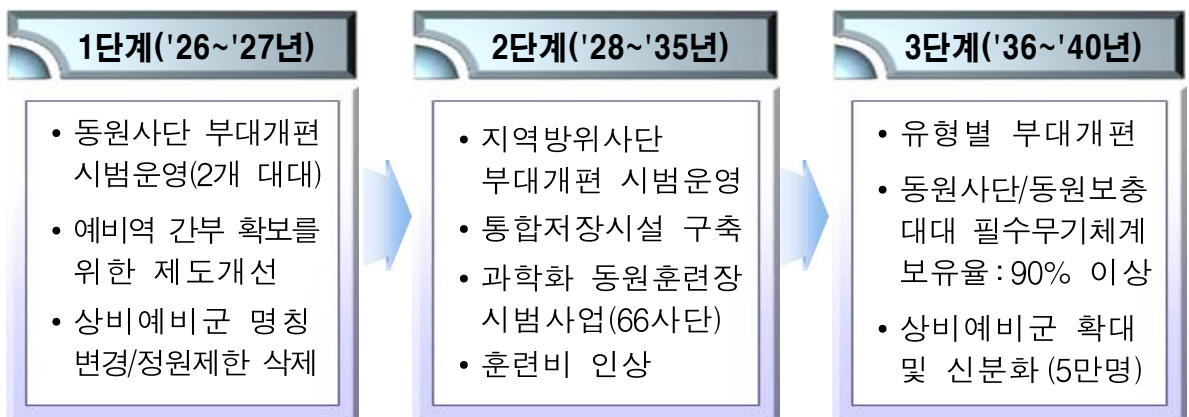
나. 과제별 추진목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적정수준의 현역 및 예비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원·지역 방위사단은 예비군 위주로 부대화하고, 상비사단은 평시 현역 편성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대구조 안을 마련한다.
- 2) 예비군(상근예비역 포함) 감소에 따라 지역예비군조직과 지역예비군 사무실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 3) 상비예비군은 '40년까지 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기(年 30일 훈련)는 동원부대의 주력 예비군으로 운용, 장기(年 70~180일 훈련)는 전문 관리자로 운용한다.
- 4) 부족한 예비역 간부 자원을 확보하여 간부 동원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 Pool을 확대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한다.  
\* 퇴역간부의 예비역 편입, 예비역 병→하사 임용 등
- 5) 훈련유형별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비군훈련 체계를 재설계하고, 드론훈련 확대, 훈련여건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한다.

- 6) 첨단 과학기술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동원훈련장 과학화와 전담 훈련대를 편성하고, 동원사단 무기체계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통합저장시설을 구축한다.
  - 7) 동원사단은 상비사단 수준(필수 무기체계 보유율·신형화율 90%이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동원보충대대는 적정부대수를 재판단하여 전력보강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 8) 병력동원지정 대상 범위 및 방식을 단순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지정률을 향상시킨다.
  - 9) 동원소요는 가용자원 기반의 소요산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시 상위직위 수행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 10) 동원훈련 I 형·II 형의 행정업무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업무를 효율화한다.
- \* 예비군 관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軍의 전투임무 전념여건을 보장

## 2. 추진전략

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각 군은 본 정책서를 기초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다. 각 군은 정책추진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반기 1회 '예비전력 혁신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라. 국방부는 장관주관으로 年 1회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한다.

마. 국방중기계획에 예비전력 보강을 위한 세부계획을 반영한다.

## 제 2 장 과제별 세부계획

- 제 1 절 부대유형별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방안 마련
- 제 2 절 지역예비군조직 효율화
- 제 3 절 상비예비군 발전
- 제 4 절 예비역 간부 확보
- 제 5 절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 제 6 절 동원훈련장 과학화 및 통합저장시설 구축
- 제 7 절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 무기체계·물자보강
- 제 8 절 병력동원부대 지정 시스템 개선
- 제 9 절 병력동원 소요 최적화 및 전시 인력운용 개선
- 제 10 절 '軍-병무청'간 예비전력 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

“공 란”

## 제 1 절 부대유형별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방안 마련

### 1. 추진 목표

- 가.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 軍의 상비병력 감축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현역과 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한다.
- 나.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는 단기 상비예비군을 주력 예비군으로 운용하여 평시에 훈련과 부대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대를 개편한다.

### 2. 기본 방향

- 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예비전력 업무수행 조직(동참부, 동원전력사령부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방개혁 군구조 개편 시 추진한다.
  - 1) 육군 동참부와 동원전력사령부 등 예비전력 담당조직의 업무 재조정, 중복업무를 통폐합한다.
  - 2) 장비보강, 예비군훈련 전담 등 동원전력사령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 3) 지역예비군조직은 軍의 지역방위책임부대로 통합하여 지역방위작전 수행 주체를 국군조직으로 일원화한다.
- 나. 부대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구조를 개편하되, 현역 또는 예비군을 배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1) 상비사단은 현행작전 및 개전초기의 위기 완화, 중·창설 소요 최소화 등 전시 임무수행여건 보장 차원에서 현역 위주로 완편하되, 병력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예비군부대를 혼합편성하는 개념을 적용한다.
  - 2) 동원사단은 초기대응 소요가 적고 전시 창설 및 동원소요가 많기 때문에 예비군 위주로 부대로 개편하되, 필수직위는 상

비예비군을 일부 편성하여 평시에 운영한다.

- 3) 지역방위사단은 유사시 즉각 초기대응이 필요한 부대와 기동화된 전력은 현역으로 편성하고, 그 외 나머지 부대는 예비군 위주로 편성한다.

\* 편성(안) : 초기대응은 보병여단별 1개 대대, 기동전력은 기동부대

다. 동원 및 지역방위사단은 동원예비군의 전시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상비예비군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되, 개편된 부대의 현역은 완전편성이 필요한 부대로 전환한다.

라. 평시에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는 부대운영의 연속성 및 동화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화하여 부대개편을 추진하되,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 및 부대운영 부담을 최소화한다.

마. 완전예비군대대 및 일부 현역이 포함된 예비군 위주부대에 대한 시범운영 및 평가결과와 상비예비군 신분 정립 등을 고려하여 부대 및 인원 편성을 최적화한다.

### 3. 세부 추진계획

구분	현 재('25년)	'26~'28년	'29~'34년	'35~'40년
동원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구조 개편안 시범운영 준비</li> <li>완전예비군대대 시범운영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구조 개편안 시범운영(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구조 개편안 확대 적용 ('29~'31년)</li> </ul>	
지역방위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구조 개편안 시범운영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구조 개편안 시범운영(3회)</li> <li>부대구조 개편안 확대 적용 ('32~'34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구조 개편안 단계별 적용</li> <li>부대 편제 조정</li> <li>작전계획 발전</li> </ul>
상비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구조 개편안 설계 시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구조 개편안미련 및 시범운영 준비</li> </ul>	

가. 동원사단은 평시에 핵심직위(지휘관, 주요장비 등)에 상비예비군을 편성하여 부대를 운영하고, 전시에는 동원예비군을 동원하여 완전한 부대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부대를 개편한다.

- 1) 동원사단(대대) 부대구조 개편(안) 작성 : ~'25. 12월
  - \* 상비예비군 편성 비율, 전·평시 임무수행간 제한사항 등 의견수렴
- 2) 1차 시범운영 (완전예비군대대 포함) : '26년 / 2개 대대
  - \* 현역·상비예비군·동원예비군 등 효율적인 편성 비율 도출
- 3) 2차 시범운영 : '27년 / 사단별 각 1개 보병대대/사단 직할
  - \* 동원전력사 연계 장비위주부대(포병, 전차) 시범운영 여부 추가 검토
- 4) 쏘 동원사단으로 확대 적용 : '29 ~ '31년
  - \* 시범운영 결과, 상비예비군 신분 정립과 연계하여 현역·상비예비군 최적 비율로 구성

나. 지역방위사단은 국지도발 및 테러 등 평시에 초기대응과 기동화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대는 예비군 위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부대를 개편한다. 이때 年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예비군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현역은 상비사단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 1) 부대구조 개편(안) 및 시범운영 세부계획 작성 : ~'28. 10월
  - \* 시범부대 선정, 상비예비군 편성 비율, 임무수행간 제한사항 의견수렴
- 2) 1차 시범운영(완전예비군대대 포함) : '29년 / 6개 사단  
각 1개 보병대대
  - \* 시범부대 : 전·평시 임무수행간 초기대응 소요 사전 조정
- 3) 2차 시범운영 : '30년 / 12개 사단 각 1개 보병대대
  - \* 사단별 특성 및 여건 식별 후 보완 → 확대 추동력 확보
- 4) 3차 시범운영 : '31년 / 2차 12개 대대 + 사단 직할부대
  - \* 사단 직할 기능부대 부대구조, 규모 및 적용방안 사전 수립
- 5) 쏘 지역방위사단 확대 적용 : '32 ~ '34년
  - \* 시범운영 결과, 상비예비군 신분 정립과 연계하여 현역·상비예비군 최적 비율로 구성

다. 상비사단은 부대구조의 완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평시 편성률을 높이고, 부대편성에 예비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군구조 개편과정에서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 기본방향은 상비사단이 현행작전 및 개전 초기 위기 완화, 증·창설 소요 최소화 등 전·평시 임무수행 여건보장이 되도록 현역위주로 부대를 편성하되, 사단별 1개 여단 또는 여단별 1개 대대를 예비군 부대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부대를 개편한다.

- 1) 상비사단의 예비군 위주 부대편성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안)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 : ~'30년
- 2) 상비사단 부대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부대구조 개편(안) 단계별 확대 적용 : '30년 이후

## 제 2 절 지역예비군조직 효율화

### 1. 추진 목표

- 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재의 지역예비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한다.
- 나. 병(상근예비역 포함) 감소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지역예비군조직 사무실을 통합한다.

### 2. 기본 방향

- 가. 예비군자원 감소 등 변화되는 작전환경과 지역별 작전임무(국가중요시설 방호 등)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예비군조직을 통·폐합하여 효율화를 추진한다.
- 나. 지역예비군조직 사무실은 상근예비역(병) 감축에 따라 합동근무체계 유지, 물자 통합관리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통합한다.
  - 1)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공간확보가 가능할 경우 읍·면·동 단위 지역예비군조직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통합사무실을 구성한다.
  - 2) 군 개편과 연계하여 지역내 군부대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통합사무실을 구성한다.
- 다. 각 군 및 수임군부대는 지역예비군조직 및 예비군지휘관의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 3. 세부 추진계획

구 분	현 재('25년)	'26~'30년
지역예비군 조직 통·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예비군조직 통·폐합 계획 수립</li> <li>국방부 '26 연도 및 '27~'31 중기 지역예비군 부대계획 지침 하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 계획에 따른 지역예비군 조직 단계별 통·폐합</li> </ul>
지역예비군 사무실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통합 유형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통합 시행</li> <li>지역예비군조직 행정업무 병무청 이관('29년~)</li> </ul>

가. 미래 예비군 자원 수 감소와 변화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효율화를 위한 국방부 기준을 마련하고 총체전력 개념하에 지역예비군 운용의 필요성 및 적정소요를 판단한다.

1) 지역예비군조직 효율화를 위한 국방부 기준 마련 : '26년

나. 각 군은 지역예비군조직 자원 수, 지역별 작전환경, 임무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조직을 통·폐합하고 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1) 지역예비군조직 효율화를 위한 군별 계획(안) 마련 : '26년

2) 추진 로드맵에 따른 조직 통합 단계별 추진 : ~'30년

다. 국방부와 각 군은 예비군 자원 수, 임무, 사무실 가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조직 사무실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1)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무실 통합 단계별 추진 : ~'30년

## 제 3 절 상비예비군 발전

### 1. 추진 목표

- 가. 미래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상비예비군의 정원을 확대하고 운영방법을 최적화하여 전시 임무수행태세를 완비한다.
- 나. 우수한 상비예비군 확보를 위한 인력 Pool을 확대하여 모집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복무혜택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한다.

### 2. 기본 방향

- 가. 年 3~4일간 훈련받는 동원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年 30일까지 추가로 복무 및 훈련하는 상비예비군을 예비군 위주부대에 편성 및 운영하여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다.
  - 1) 年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예비군이 동원부대의 주력 예비군이 되고 이들 중 소규모를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하여 관리자로 운영한다.
  - 2) 기본적으로 年 30일 훈련(Part time, 주말 근무)하는 단기 상비예비군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 나. 단기 상비예비군의 훈련일을 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표준화, 선발 및 운영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단위로, 연장 희망 시 심의에 의거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 '27년까지 6,000명 이상으로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다. 상비예비군으로 지원이 가능한 인력 Pool을 확대하고, 우수한 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직위를 확대한다.
- 라. 훈련참가비 인상, 다양한 복무혜택 부여 등을 통해 훈련과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 마. 상비예비군의 신분과 역할 정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3. 세부 추진계획

구분	현재('25년)	'26~'27년	'30년	'35년	'40년
규모	3,700명	6,000명	1.6만명	3만명	5만명
참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평일 10만원, 주말 15만원</li> <li>장기) 15만원</li> </ul>	15만원	보통/특별인부 노임단가 수준		
훈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15일</li> <li>장기) 70~18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15~30일</li> <li>장기) 70~18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30일, 장기) 180일</li> </ul>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단위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년단위 선발</li> <li>정원제한 폐지</li> </ul>	역할과 신분정립	-	

가. 상비예비군 운용규모는 미래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예비군 위주 편성부대의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용 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1) 「예비군법 시행령」에서 상비예비군 정원 제한 삭제 : '26년
- 2) '완전예비군대대' 시범운영을 통해 핵심직위에 적정수준의 상비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 마련 : '26년
- 3) 주요 신규 전력화 장비 직위 등 현역 부족 직위는 상비예비군 통제 직위로 설정하고, 연중 선발하여 일관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운영 여건을 보장한다.
  - \* 상비예비군 직위는 年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예비군 중심
- 4) 현역에서 감축되는 직위에 '단기 상비예비군'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나. 단기 상비예비군은 훈련기간을 年 30일로 단일화하고, 장기 상비예비군의 훈련기간은 年 180일을 기본으로 하되 훈련과 직무를 혼합한 형태로 복무방법을 구상한다.

- 1) 단기 상비예비군의 훈련은 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일자별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및 교안 제작 : '26년
  - \* 30일 훈련모델 정립 및 시범운영 : '25년도 / 75사단·37동원지원단
- 2)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은 개인훈련(月 2일)과 부대훈련(年 1회)으로 구분하고 개인훈련은 휴일 위주로 실시한다.
  - \* 30일 훈련=(매월 2일×12개월)+(동원훈련 3일+전·후 각 1일)+(예비 1일)

3) 장기 상비예비군의 훈련과목에 드론 교육을 반영하고 드론 비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 '25년 80명 → '26년 200명 → '27년 500명으로 점진적 인원 확대

다. 훈련참가비는 상비예비군에게 평일·주말 구분 없이 모두 보통/특별인부 노임단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교통비 등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라. 상비예비군의 선발 주기는 1년 단위에서 다년 단위로 개선하고, 「예비군법」에 기존 비상근예비군으로 사용한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며, 역할과 신분 정립도 추진한다.

1) 상비예비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할 경우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26년

2)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개정 : '26년

3) 상비예비군 훈련 참여 여건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벌칙 제도 마련 : '26년

4) '지원에 의한 복무'라는 실질에 맞추어 계약직 등의 새로운 복무 형태(part-time 군인)를 반영한 개별 법령 제정 추진 : ~'30년

\* 가칭 「상비예비군 인사관리법」, 가칭 「상비예비군 복무 기본법」 등

5) 상비예비군 관련 개별 법령 제정과 연계하여 「병역법」에서 상비예비군 소집조항 삭제 : ~'30년

\* 「병역법」에서 상비예비군 소집조항을 삭제하여 동원훈련의 소집 형태에서 탈피한 개념을 적용

## 4. 법령 개정

### 가. 법령 개정

구 분	'25년 ~ '30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군법령 개정('25~'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변경</li> <li>- 예비군법 시행령 상 정원 제한(단기 5,000명, 장기 700명) 삭제</li> </ul> </li> <li>• 병역법 개정(~'30년) : 상비예비군 소집조항 삭제</li> </ul>

## 제 4 절 예비역 간부 확보

### 1. 추진 목표

가. 평시에 부족한 예비역 간부 자원을 확보하여 전시 간부 동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 2. 기본 방향

가. 부족한 예비역 간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Pool을 확대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한다.

- 1) 간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 Pool 확대를 위해 예비역 병을 예비역 하사로 임용, 퇴역자가 희망 시 예비역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 2) 여군 중 예비역으로 편성된 인원은 모두 동원지정, 예비역 간부가 복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전시대기법의 평시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3) 예비역 간부 진급 현실화를 위해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개선하고 예비역 간부 진급을 2단계 이상으로 확대한다.

### 3. 세부 추진계획

구 분	현 재('25년)	'26년	'27년
예비역 병의 하사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지시 작성</li> <li>• 임용자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자 확대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자 확대 선발</li> </ul>
퇴역자의 예비역 전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개정</li> <li>• 예비역 전환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역 전환 최초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역 전환 확대</li> </ul>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군예비역 전원 동원 지정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원훈련장 내 여성 필수 시설 설치 예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원훈련장 내 여성 필수 시설 확보</li> </ul>
예비역 간부 복무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역 간부 복무기간 연장(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역 간부 연령정년 확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역 간부 연령정년 확대 법령 개정</li> </ul>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 복무기간 단축시행(안) 마련</li> <li>• 관련법령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 개정 추진 * 병역법 시행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 복무기간 단축 시행</li> </ul>
예비역 간부 2단계 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의견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운영(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운영 * 장기 상비예비군 대상</li> </ul>

가. 예비역 병을 예비역 하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되 지원대 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1) 예비역 하사 임용 선발체계 구축 및 선발 : '25. 3~7월
  - \* 지원서 접수(3월), 1·2차 심사(7월), 대상자 교육/명령발령(~10월)
- 2) 예비역 하사 임용 선발결과 분석 : '25. 9월
  - \* 임용자 전시 직위 판단, 지원율 저조 병과특기 추가 확보 방안 등
- 3) 지원대상자 확대방안 마련 : '26년 2월
  - \* 홍보, 다양한 혜택 제공, 인센티브 등 지원동기 부여 방안 마련

나. 간부로 복무 후 연령정년 도래 등으로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1) 퇴역간부가 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토록 「군인사법」 개정 : '25년
- 2) 개정 「군인사법」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퇴역간부 예비역 편 입 제도 마련 및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 '25. 7월
  - \* 개정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지원 요건, 절차, 복무기간 등 구체화

다. 여군 간부로 복무 후 예비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동원지 정하여 평시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1) 모든 여군예비역은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 I 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시행 : '25년
- 2) 동원훈련장 내 여성 필수시설 설치 예산 확보 : '26년
- 3) 동원훈련장 내 여성 필수시설 확보 추진 : '27년 이후

라. 전시에 예비역 간부의 연령정년 연장을 병사와 같이 평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 1) 전시에 병(현역·예비역·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제83조(전 시특례)에 의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병역 의무기간을 40에서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평시에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2) 간부는 전시대기법인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특례법」에서 연령정년에 5년을 가산한 연령으로 적용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3) 이에 따라 간부의 연령정년 관련 예측가능성 및 병과의 형

평성 차원에서 전시 연령정년 특례 규정을 「군인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시부터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 '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마. 예비역 간부 진급 시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많은 인원이 진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 현역 평균 진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역 최저 복무기간을 산정하고 시행방안 마련 : '26년

\* 하사 → 중사, 중사 → 상사, 소위 → 중위, 중위 → 대위

2) 예비역 간부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단축 시행 : '26년

바. 예비역 간부의 진급을 2단계 이상으로 확대하되, 직접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대대급 이하 지휘관(자) 및 참모를 대상으로 하되 중위 → 소령, 대위 → 중령, 하사 → 상사로 한정한다.

1) 장기 상비예비군 중 동원소요가 많은 계급으로 한정하여 예비역 간부 2단계 진급 시범운영 계획 수립 : '26. 3월

2) 장기 상비예비군의 예비역 간부 2단계 진급 시범운영 : '27년 2월

3) 모든 예비역 간부에게 2단계 진급 확대 적용 : '27년

#### 4. 법령 개정

구 분	개 정 소 요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	장교 최저복무기간 개정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의 별표 19) * 병역법 시행령 개정 후	장교 및 부사관 최저복무기간 개정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 (4. 세부시행지침) * 병역법 시행령 개정 후	장교 및 부사관 최저복무기간 개정

## 제 5 절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 1. 추진 목표

- 가. 훈련유형별 목적에 부합하고 요망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비군훈련체계를 재설계하고 예비군훈련을 강화한다.
- 나. 예비군이 원활하게 훈련에 참여하고 예비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건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 2. 기본 방향

- 가. 훈련 유형별 목적에 부합한 실전적인 예비군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체계를 재설계하고 강화한다.
  - 1) 동원훈련 I 형은 군단 및 지역방위부대 특성에 부합한 실전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동시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원활한 훈련여건을 조성한다.
  - 2) 동원훈련 II 형은 전시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주특기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훈련체계를 개선한다.
  - 3) 지역예비군훈련은 현역과 통합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체계를 개선한다.
- 나. 미래 인구절벽과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예비군훈련체계를 재설계한다.
  - 1) 예비군 보류제도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종과 신분을 정비하고, 이를 고려한 훈련방안을 마련한다.
  - 2) 연기제도를 정비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과 전투력 수준 유지에 제한이 없도록 예비군훈련체계를 재설계한다.
- 다. 예비군훈련 참여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일정 본인선택제 적용을 확대하고, 예비군에게 훈련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훈련참가비를 현실화한다.

### 3. 세부 추진계획

구 분	현 재('25년)	'26년	'27년
동원훈련 I 형	• 시범운영(7개 부대)	• 시범부대 확대 (13개 부대)	• 전 부대 적용(육군) • 시범운영 (해군, 해병)
동원훈련 II 형, 지역예비군훈련	• 시범운영(6개 부대)	• 시범부대 확대(육군)	• 전 부대 적용(육군) • 시범운영 (해2, 공1, 해병2)
드론훈련	• 시범운영 (육군 6개 부대) • 드론훈련장 구축	• 시범운영 (해·공군, 해병) • 드론훈련장 구축	• 드론훈련장 구축
예비군훈련 보류 및 연기제도 개선	• 보류직종 정비 • 보류해소시 훈련 방안 검토 • 예비군훈련 연기 제도 개선안 검토	• 보류제도 개선안 수립 • 예비군훈련 연기제도 개선안 수립	• 보류제도 개선안 일부 적용 • 예비군훈련 연기제도 개선안 시범적용
훈련참가비 현실화	• 최저시급의 12~29%	• 최저시급의 15~40%	• 최저시급의 35~60%

가. 동원훈련 I 형은 군단 및 지역방위사단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시통합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훈련여건을 조성한다.

- 1) 전방군단 동시통합훈련은 전시 완편 개념 하 동원위주부대의 통합작전수행 및 작계시행 임무수행 능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 2) 지역방위부대 동시통합훈련은 총무계획과 연계하여 작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훈련방안을 마련하고, '25년도에 시범운영(지역방위사단 7개 대대) 후 쏘 지역방위사단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 동시통합훈련 개선 (지역방위부대)

구 분	기 존	개 선
동원집행	병력동원	병력·수송 동원 등
가용 전투력	군 부대 전투력 (현역+동원예비군)	군 부대 전투력 + 통합방위 작전요소 * 지역예비군 동원 (기동대 위주)

가) 시범부대 확대(육군 13개 사단) 및 시범부대별 훈련규모 확대(1~2개 지역방위대대+직할중대) : '26년

나) 지역방위사단 숲 여단 적용 / 훈련규모 확대(1~3개 지역방위대대), 대규모 훈련 시 통합시행 방안 검토 및 해군, 해병대 시범적용 : '27년

나. 동원훈련Ⅱ형은 직책별 주특기훈련을 강화하여 전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체계를 개선한다.

1) 시범적용(육군 3개 사단) 및 훈련표준모델 개발 : '25년

2) 시범적용 확대(육군), 해·공군, 해병대 시범적용 검토 : '26년

\* 영상모의사격(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 추가 화기 운용 필요성 검토

3) 전면적용(육군), 해·공군, 해병대 시범적용 : '27년 이후

\* 영상모의사격(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 추가 화기 시범 운용

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역과 통합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체계를 개선한다.

1) 시범적용(육군 3개 사단) 및 훈련표준모델 정립 : '25년

\* 반기 단위 6H 훈련 → 행동화 위주 훈련(8H), 절차식 교육(4H)

2) 시범적용 확대(육군), 해군·해병대 시범 준비 : '26년

3) 전면적용(육군), 시범 적용(해군·해병대) : '27년 이후

라. 드론훈련은 예비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과 운용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훈련체계를 마련한다.

1) 교육용 드론 전환 및 간이 드론훈련장 구축 : '25년

2) 상용 교육용 드론 확보 및 드론 훈련장 구축 : '26~'30년

3) 훈련체계 정착을 위한 육군 시범운용 : '25년~

4) 공군·해군, 해병대 시범운용, 전투발전 소요 반영 : '26년

\* 예비군부대 구조/편성 반영, 전문교관 양성 확대, 드론교육 모델 발전

마.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해 지역예비군(재난) 동원과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고 있는 직종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바. 예비군훈련 연기제도는 무분별한 예비군훈련 연기행위를 방지

하고 예비군 전투력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현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1) 동원훈련 I 형은 소집부대의 역량 범위내에서 재입영훈련 횟수를 증가하여 전시 완편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 2) 예비군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예비군 편성이 완료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사. 예비군훈련 참가비(훈련비, 급식비 등)를 사회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에게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한다.

- 1) 훈련비 :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 2) 급식비 : 사회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계적 인상한다.
- 3) 향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토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원훈련 I 형, 동원훈련 II 형(舊 동미참훈련) 및 지역예비군 훈련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 연도별 훈련참가비 인상 추진(案)

\* '26년 기준 최저시급(10,320원) 적용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훈 련 비	동원훈련 I 형	82,000원	95,000원	150,000원	210,000원	270,000원	330,240원*
	동원훈련 II형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80,000원	260,000원	330,240원
	5~6년차 지역예비군	-	20,000원	75,000원	112,500원	162,500원	206,400원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	10,000원	30,000원	45,000원	65,000원	82,560원
급식비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 '26년 최초로 훈련받는 모든 예비군에게 훈련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완료('25. 12. 2.)

아. 예비군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일정 본인선택제를 시행한다.

- 1) 시범적용(육군) 및 훈련신청 전산시스템 개선 : '25년
- 2) 시범개선 적용(육군), 해·공군, 해병대 시범 적용 준비 : '26년
- 3) 확대적용(육군), 시범적용(공군·해군·해병대) : '27년
- 4) 전면적용(육군), 확대적용(공군·해군·해병대) : '28년 이후

## 제 6 절 동원훈련장 과학화 및 통합저장시설 구축

### 1. 추진 목표

- 가.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첨단장비를 활용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과학화 동원훈련장으로 설치하고 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나. 동원사단에 전력화되는 주요 무기체계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저장시설을 구축한다.

### 2. 기본 방향

- 가. 기존의 낙후된 동원훈련장을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훈련장으로 구성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과학화 동원훈련장 구축을 추진한다.
  - 1) 과학화 동원훈련장은 훈련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을 현대화한다.
    - \* 종합훈련시설(실내사격장, VR영상모의, 장비조작 시뮬레이터, 전술 훈련장), 과학화 교전장비(마일즈) 및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 2) 예비군 자원수 감소를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
  - 3) 동원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부대의 훈련전념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진행 및 시설·장비관리를 전담하는 동원훈련장 훈련대를 편성하여 운용한다.
- 나. 동원사단에 편제되었거나 전력화되는 주요 무기체계(K1E1전차, 105mm·155mm화포, 현궁, TICN)들을 장기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저장시설을 구축한다.
  - \* 첨단장비를 장기간 저장·관리(항온·항습 등)하여 전투준비시간 단축

### 3. 세부 추진계획

구 분	현 재('25년)	'26년 ~ '27년	'28년 ~ '30년	'31년 이후
과학화 동원훈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26년 4월)</li> <li>• 종합발전계획 연구 ( ~'26년 6월)</li> <li>* 예비군훈련장 통합 운용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년 연도예산 반영</li> <li>• 훈련대 TF 시범 운영 준비 (인원편성 반영, 운용환경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구축 (~'30년, 66사단)</li> <li>• 동원훈련장 훈련대 TF 시범운영 (1개 부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운영 및 확대 ('31년 ~)</li> </ul>
통합저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사업 설계 착수 (66사단, 가평)</li> <li>• 2차사업 부지확보 추진 (남양주, 양주 일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사업 운용개념 정립('26년)</li> <li>• 1차사업 공사 착수('26년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사업 완료(~'28년)</li> <li>• 2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구축 * 73·75사단(1개소), 60·72사단(1개소)</li> </ul>	

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하는 동원훈련장 훈련대를 편성한다.

구 분	'25년	'26년	'27년 ~ '30년	'31년 이후
과학화 동원훈련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사업 타당성 조사 (8월 ~ '26. 4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27년 연도예산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훈련장 구축 (66사단)</li> <li>• 종합발전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운영</li> <li>• 훈련장 구축 확대('31년 ~)</li> </ul>
훈련대 편성 /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대 TF 시범운영 준비 (인원편성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대 편성 시범운영 ('28년 ~, 66사단)</li> <li>• 훈련대 편성 최적화('29년 ~)</li> </ul>	

1) 종합훈련시설, 과학화 장비 및 훈련체계 구축한다.

가) 1단계(~'30년): 보병/장비위주 부대 시범사업 구축

나) 2단계('31년~): 시범운영 성과분석 결과 반영, 확대 구축

2) 예비군 자원수 감소 고려, 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과 통합하여 최적화 운영이 가능토록 권역화한다.

3) 과학화 동원훈련장 시스템 및 장비·물자 관리, 훈련 통제를 위한 전문화된 조직 최적화 판단 및 부대계획 반영한다.

가) 1단계(~'27년) : 現 동원훈련장 훈련대 TF 시범운영 준비

나) 2단계('28년~) : 과학화 동원훈련장 훈련대 편성(66사단)

나. 무기체계 통합저장시설은 장비 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항온·항습 및 미세전원공급장치 등이 구비된 시설로 구축하여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한다.

- 1) 보관장비는 K1E1전차, 105mm·155mm화포, 현궁, TICN
- 2) 항온·항습, 미세전원공급장치 등 장비 성능 유지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 편성 하 관리한다.

※ 무기체계 통합저장시설 구축(案)



< 건축 조감도 >

- (기본개념) 전시 배속 군단 축선 고려 3개소 구축
- (저장장비) K1E1전차, 현궁, TICN, K105A1, K55A1 등
- (주요기능) 항온·항습, 미세전원공급장치 등 장비 성능 유지의 최적화 시스템 구축
- 통합저장시설 구축 1차 사업계획(총 4년, '25~'28년)
  - 장소 / 사업비 : 66사단(사령부) / 총 432억원
  - 구축규모 : 3동(전차 등 190대 보관 가능)

## 제 7 절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 무기체계물자 보강

### 1. 추진 목표

- 가. 전시 임무를 고려하여 동원사단은 필수 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한다.
- 나. 동원보충대대는 부대 유형별(보병, 전차, 포병 등)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무기체계를 상비사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강한다.

### 2. 기본 방향

- 가. 동원사단은 '26년부터 포병여단 및 사단 직할부대의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31년부터는 동원사단 소 부대의 필수 무기체계 보유율 및 신형화율 90% 이상을 목표로 신규 무기체계 확보를 추진한다.
- 나. 동원보충대대는 부대개편과 新작전계획 수립에 따라 적정 부대수 산출 및 조정과 연계하여 전력보강계획을 수립 후 무기체계 확보를 추진한다.
  - 1) 병과별 부대 특성에 따라 필수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보충하되, 창설시기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강한다.

### 3. 세부 추진계획

구 분	현 재('25년)	'26~'30년	'31~'35년	'36~'40년
동원사단 보병여단	• 보유율 : 85% • 신형화율 : 51%	• 보유율 : 98% • 신형화율 : 80%	• 보유율 : 100% • 신형화율 : 80%	• 보유율 : 100% • 신형화율 : 90%
동원사단 포병여단, 직할부대	• 보유율 : 36% • 신형화율 : 19%	• 보유율 : 80% • 신형화율 : 35%	• 보유율 : 90% • 신형화율 : 55%	• 보유율 : 90% • 신형화율 : 90%
동원보충대대 보병위주부대	• 보유율 : 26% • 신형화율 : 10%	• 보유율 : 90% • 신형화율 : 25%	• 보유율 : 90% • 신형화율 : 30%	• 보유율 : 90% • 신형화율 : 65%
동원보충대대 장비위주부대	• 보유율 : 26% • 신형화율 : 10%	• 보유율 : 43% • 신형화율 : 19%	• 보유율 : 70% • 신형화율 : 30%	• 보유율 : 90% • 신형화율 : 65%

가. 동원사단은 상비사단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동원사단 소 부대의 필수 무기체계 보유율 및 신형화율 90% 이상을 목표로 전력보강을 추진한다.

1) 보병여단은 現 필수 무기체계 34종을 지속 보강하여 보유율 98%·신형화율 80% 이상을 달성하고,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는 필수 무기체계를 선정 후 보유율 80%·신형화율 35% 이상을 목표로 보강 : '25~'30년

2) 소 부대의 필수 무기체계 및 장비의 보유율은 90% 이상, 신형화율은 55% 이상 수준으로 확보 : '31~'35년

가) 특히, 보병여단은 육군 계획에 의거 정보, 화력, 기동 등 전투수행 기능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력화를 추진하고, 차량화 등을 통해 신속기동 능력을 확보 추진

3) 장비·물자 보강계획에 따라 기동화·네트워크화·지능화 부대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수 무기체계 보유율 및 신형화율 90% 이상을 목표로 추진 : '36~'40년

나. 동원보충대대는 대대단위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부대 유형별 (보병, 전차, 포병 등) 운영개념을 재정립하여 작전계획에 반영하고, 필수 무기체계 보유율 90%를 목표로 전력화 추진한다.

1) 동원보충대대의 적정 소요와 규모를 재판단하되, 전시 초기에 우선 동원전개 되어야하는 동원보충부대를 중심으로 임무에 맞게 장비·물자를 우선 보강한다.

2) 장비위주부대의 경우 부대별 특성(포병, 전차 등)·상비사단과의 상호운용성·무기체계 전투력지수 등을 고려하고, 보병위주부대는 전투력지수에 영향이 큰 공용화기(기관총, 박격포 등) 위주로 선정하여 전력화 : '25~'30년

3) 장비위주부대는 필수 무기체계의 보유율 70%·신형화율 30% 이상, 보병위주부대는 보유율 90%·신형화율 30% 이상을 목표로 장비 전력화 추진 : '31~'35년

가) 장비위주부대는 동원사단 부대개편과 연계 하 작전 수행

이 용이하도록 지상망 기반 통신체계를 확보하고, 통합 네트워크 체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필수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보강한다.

나) 보병위주부대는 도보 위주의 근접전투에서 탈피하여 상비사단과 연계, 통합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동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를 보강한다.

다) 10개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에 방탄복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4) 부대유형별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필수 무기체계 보유율 90%·신형화율 65% 이상을 목표로 장비 전력화 추진 : '36~'40년

## 제 8 절 병력동원 부대지정 시스템 개선

### 1. 추진 목표

- 가. 병력동원 부대지정 범위와 지정 방식을 단순화하여 동원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동원지정률을 향상시킨다.
- 나. 동원부대 미지정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장환경이 익숙한 현역시 복무한 부대로 동원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2. 기본 방향

- 가. 병력동원지정 대상 범위, 방식 등 지정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1) 예비군 1~4년차 전체를 동원지정할 수 있도록 전국 지정, 병과특기 분류 단순화 등 지정체계를 간소화하여 지정률 향상방안을 마련한다.
    - \* 동원부대 지정체계 변경에 따른 훈련장 이동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체계 개선 병행
  - 2) '동원부대 미지정자' 용어를 변경하고 이들을 동원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나. 현역 시 복무한 부대를 고정적으로 지정하여 관리소요를 줄이고 군복무 경험을 활용한 전투력 극대화 방안을 검토한다.

### 3. 세부 추진계획

현 재('25년)	'26년	'27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력동원지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li> <li>• 동원병력 수송체계 개선 방안 정책연구</li> <li>• 병력동원지정 시스템 개선방안(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총무집행계획 등 개선소요 검토</li> <li>• 군내·외 의견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동원업무 훈령, 국방부 총무집행계획 등 제도 반영</li> </ul>

- 가. '병력동원 부대지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원지정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 1) 전시에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출신부대)로 입영하고, 평시 훈련은 거주지 인근에서 받는 전시 동원부대와 평시 훈련부대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 2) 동원지정부대 변경에 따른 적소율 변화, 전시소집 이동거리 증가 등 주요 지표의 변화를 모의 분석(시뮬레이션)하여 검증한다.
- 나. 전시에 소집부대로 이동하는 동원병력에 대한 수송체계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1) 동원령 선포 시 동원병력이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모의분석(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시 병력수송계획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2) 현행 수송방식(개별입영, 집단수송) 외에 거점(허브)수송 등 효과적인 전시 병력수송 방식을 도출한다.
- 다. 동원부대 미지정자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현재의 '동원부대 미지정자' 용어를 재검토하고, 동원부대 미지정자 최소화를 위한 동원지정방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한다.
- 라. 개선안에 대해서는 군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국방부 훈령 및 총무집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명문화한다.

#### 4. 법령 개정

구 분	개 선 내 용
「국방동원업무 훈령」, 국방부 총무집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화된 동원부대 지정 방침</li> <li>• 재정립된 '동원 미지정자' 용어 등</li> </ul>

## 제 9 절 병력동원 소요 최적화 및 전시 인력운영 개선

### 1. 추진 목표

- 가. 현실적인 동원규모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동원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나. 계급별 인력 불균형 및 비정상적인 지정 구조를 보완하고, 전시 상위직위 수행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 2. 기본 방향

- 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원소요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 1) 동원계획수립 시 가용자원과 연계된 현실적인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 2) 부대별 상이한 전시 확장률과 편제간 차이를 정비하고 검증 절차를 제도화한다.
- 나. 실제로 동원지정되는 직위와 임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 1) 전시에 실제로 수행할 직위에 맞는 봉급, 수당, 전공상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 2) 장기적으로는 전시에 부여받은 직위에서 임무수행 시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상근거를 마련한다.
- 다. 모든 과제는 동원기능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 문제이므로 작전·조직·인사 등 전투 및 전투지원 기능과 연계 하 협업을 전제로 통합적인 접근과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라. 군구조 개편, 전시 동원소요 재검토, 예비군 연차조정 등과 연계하여 훈련대상자를 재선정한다.

### 3. 세부 추진계획

구 분	현 재('25년)	'26년	'27년
소요산정 기준정비	• 가용자원 기반 산정 및 부대유형별 표준화	• 합참 기준 재정립, 조직정원체계 연동 방안 마련	• 신규 소요산출기준 적용
전시편제 검증 체계화	• '전시편제 검증제' 추진(3년 주기)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개정	• 검증 프로세스 단축 및 단계별 조정 시스템 구축
상위직위 보상 제도화	• 수행직위 기준봉급 전공상 반영(안) 마련	•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개정	• 보상직위, 대상 확대 • 전공상 기준 확대
진급 및 임용 연계	• 지정자 대상 예비역 간부 진급 우선권	• 군 인사법·동원지침 반영	• 간부 부족 해소, • 동원 총원력 강화
예산·홍보 기반마련	• 예산 증액/e알리미 연동 안내체계 구축	• 정책홍보, 기재부 협의	• 예산 증액 검토 / 확대

가. 가용 예비군 자원을 고려하여 「전시 부대확장계획」을 수립한다.

1) 국방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한 전시편제 검증 : '25년

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에 명시된 “(요약)합참은 3년 주기로 전시 증·창설 소요 필요성 검증, 편제를 효율화 한다.”를 준용하도록 지침화한다.

나) X+2년까지를 1개 주기로하여 전시 증·창설 소요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구 분	육 군	해군 / 해병대	공 군
X 년 (전투부대)	보병, 기갑, 항공	보병, 기갑, 항공, 함정	비행부대, 방공관제·포병부대
X + 1년 (전투지원부대)	포병, 통신, 공병, 정보, 화생방, 군사경찰	포병, 공병, 통신	정보통신, 정보, 기상, 공병부대
X + 2년 (전투근무 지원부대)	보급, 정비, 탄약, 수송, 야전병원, 기록정보관리단, 정보체계관리단, 훈련단, 병과학교, 사관학교,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정비창, 보급창, 작전지원전대 등

2) 부대별 상이한 '전시 부대확장소요 기준' 표준화 : '27년

가) 지역방위사단별 부대 확장률의 기준이 없어 동원지정 소요를 과도하게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부대확장률을 표준화하여 적용한다.

나) 표준화된 부대확장률 범위내에서 소요를 제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나. 전시 예비역 간부 연령정년 연장을 「군인사법」에 명기 : '26년

1) 현재 전시법에서 간부의 연령정년을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병과 동일하게 「군인사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다. 상위직위 지정자에게 예비역 진급 기회 부여 : '27년

1) 상위직위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적격자를 분류하여 동원지정하고, 간부 진급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가) 가용자원이 과도하게 많은 계급의 소요 특기 및 병과 적소자 중에서 상위직위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을 선발하여 지정한다.

나) 상위직위에 동원지정된 인원에게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발송 시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진급 우선선발 대상임을 명시한다.

\* '25년은 병에서 부사관 임용제도를 최초 시행하였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예비 지원자 선발 등으로 1,700여명 지원

2)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을 위한 예산(홍보 / 선발)을 확보하되, 상위직위 예상 지정 인원의 진급 및 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대 추진한다.

라. 전시 상위직위 수행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 '27년

1) 상위 직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 에 대한 '전시직무 확인서' 발급를 발급하고 기록하도록 제도화한다.

가) 장성급 지휘관이 상위 직위에서 임무를 수행한 인원 에 대해 전시직무 확인서를 동원 해제 시 교부하고 보훈·보상·징계 등에서 정당한 권리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현재의 수당지급 구조를 보완하여 '전시 직위 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가) 「군인보수법」에 전시 수행직위를 기준으로 보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한다.
- 나) 상위 직위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우 수행직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 3) 전공상 보상기준이 현실화하여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 가) 현재는 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과 보훈 등급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군인연금법」 및 「보훈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전공상 보장기준을 현실화한다.
- 마. 병력감소와 전시 작전소요를 고려한 군구조 개편방안 및 전시 동원소요를 재검토 후, 동원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비군 연차조정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재산정한다.
  - 1) 작전개념 및 병력공급전망, 민간자원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체전력 차원의 병력규모 결정 : '26. 6월
  - 2) 미래 병력규모 결정과 연계 하 전시 동원소요 및 동원지정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재산정한다.

#### 4. 법령 개정

구 분	개 선 내 용	비 고
군인보수법	수행 직위 기준 봉급·수당 지급 조항	보상 현실화
군인연금법	전공상 보상 기준을 수행 직위 기준으로 개정	형평성 확보
군 인사법	정년 연장, 예비역 편입 확대 근거 마련	간부자원 확보

## 제 10 절 '軍-병무청'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

### 1. 추진 목표

- 가. 軍-병무청간 행정업무 일원화로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기관(軍, 병무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한다.
- 나. 군부대의 예비군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 여건을 보장한다.

### 2. 기본 방향

- 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 훈련참가비 지급, 무단불참자 고발, 연기 및 보류처리 등 각종 예비군훈련 관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고 군부대는 훈련과 전투준비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한다.
  - \* 동원훈련 I 형 예산집행 및 동원훈련 II형 행정절차 이관 후 지역예비군 훈련(기본, 작계) 및 보류자 접수/해제 업무 이관 추진
- 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예비군 관련 법규 정비, 병무청 앱 및 행정시스템 개발, 병무청 인력 충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 \* 병무청 시스템은 병무청에서 예비군 관련 정보를 직접 획득 및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단계적으로 국방동원정보체계 연동 추진
- 다. 지방병무청의 안정적 업무수행 보장을 위해 1~2개 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27년 이후) 후 지방병무청별로 단계적인 이관을 추진한다.
  - \* 軍-병무청 협의 하 지방병무청별 자원 현황, 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 구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지방병무청 선정

### 3. 세부 추진계획

현 재('25년)	'26~'27년	'28~'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이관범위 식별 및 세부목록 협의</li> <li>• 업무이관 로드맵 작성</li> <li>• 합동직무분석을 통한 개략적 인력소요 산출</li> <li>• 국방부-병무청 정책협의체 발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및 규정 개정</li> <li>•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병무청앱) 개발</li> <li>• 시범운영('27년~)</li> <li>* 시범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등 준비(~'26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병무청별 단계적 적용('29년~)</li> <li>* 병무청 인력확보 등 고려</li> <li>• 지역예비군훈련 등 이관 검토('30년~)</li> </ul>

\* 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 완공, 병무청 인력확보 등 고려 판단

가. 軍-병무청간 행정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과업을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원훈련 I 형 훈련예산 집행</li> <li>• 동원훈련 II형(훈련편성, 통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예비군훈련(기본, 작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류자 접수 및 해제 업무</li> </ul>

- 1) 병무행정시스템 개선 소요 도출 및 관련 예산 반영 : '26년  
\* 동원훈련 I 형 예산집행, 동원훈련 II형 관련 행정처리(훈련편성, 통지 등)
- 2) 업무 이관에 따른 병무청 인력 확보 방안 마련 : ~'26년
- 3) 업무 이관 관련 시범운영(지방병무청 1~2개) : '27년~'28년
- 4) 병무청이 행정업무 전담 시행 : '29년 이후

나. 동원훈련 I·II형에 적용되는 무단불참 고발, 연기 등 예비군훈련관련 행정처리 기준을 일치시키고 예산집행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 동원훈련 I 형을 기준으로 재정립하되 동원훈련 II형 특성 고려 예외조항 검토

#### ※ 동원훈련 I·II형 행정기준 불일치 내용

구 분	동원훈련 I 형	동원훈련 II형
편 성	年 1회	年 3회
고 발	무단불참 1회 고발	무단불참 3회 고발
통 지	모바일 전자고지, 이메일, 등기	左同 + 방문 통보

다.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 보류자 접수 및 해제관련 업무이관은 동원훈련 I·II형과 관련된 행정업무 이관 후 추진한다.

#### 4. 법령 개정

구 분	'25년	'26년	'27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 개정 소요 식별</li> <li>• 훈령 개정소요 식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 개정(안) 마련</li> <li>• 국방부 / 병무청 훈령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 개정</li> </ul>